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7년 포어 §

다시 거룩한 교회로!
(롬1:17, 레19:2)

十 행동 지침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안식년)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소선지서 강해 - 아모서

이방나라들의 징벌

(아모스 1:3 - 2:3)

원로목사 이종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 다. 그러나 아담 이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안타까운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대적한 사람들을 결코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1. 서너가지 죄

‘서너 가지 죄’는 죄의 수를 말하기보다 죄가 많아서 점점 더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율법 없이 범죄 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 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롬2:12). 율법이 있는 유대민족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시겠지만, 율법이 없는 이방 백성들은 율법이 없는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1) 다메섹의 잔인한 죄

“다메섹의 서너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3절).

다메섹은 수리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들은 유대민족을 철타작기로 곡식을 때리듯이 탄압했습니다. 열왕기하10장32절이하에는 아람왕 하사엘이 이스라엘 예후시대에 범한 죄악이 본문에 나옵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핍박을 할 때 하나님은 불신자들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2) 가사의 인신매매죄

“가사의 서너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6절).

가사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잡아 원수의 나라인 에돔에 넘기는 인신매매를 했습니다.

(3) 두로의 계약파기 죄

“두로의 서너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9절).

두로는 베니게의 별명입니다. 두로는 다윗과 솔로몬왕때에 형제계약을 맺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로는 이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수리아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서 에돔에 넘겼습니다.

(4) 에돔의 이스라엘을 향한 증오의 죄

“에돔의 서너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11절).

에돔의 죄는 하나님 백성에 대한 증오심입니다. 그들의 증오심은 점점 깊어져 결국 하나님의 징벌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같길은 심판대입니다.

(5) 암몬의 강포의 죄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라”(13절).

암몬은 자기의 지경을 넓히려고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갈랐으니 그 잔인성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임부의 배를 가르는 것은 종자를 말려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6) 모압의 무자비한 죄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수 갚는 방법으로 매장한 왕의 시체를 파내서 그 뼈를 불살랐 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를 모독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의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을 조이고 있는데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징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암2장4절 이하에 보면 이방나라들만 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 다와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앞에서 징벌을 받게 까 두려워하며 빨리 돌이켜 회개를 해야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원수들이 조 롱하고 공격할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시지 않거니와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들대로 죄를 회개하고 자복해야합니다.

2.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이유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여섯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인권을 유린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서로 물고 찢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진노 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교회에는 이방나 라의 서너가지 죄와 같은 잔인한 죄, 형제를 무시하고 이용한 죄는 없습니까? 우리가 바로 두 로이고 블레셋이며, 모압이고 암몬입니다. 우리 사회와 국가에 만연된 이 서너가지죄를 간절히 회개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 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총회 헌법위, 헌법해석 내려져

- 예결산 및 장로 선출을 위한 상회(노회)지시는 위법 -

당회 서기 노문환 장로가 지난 4월 13일자로 박노철목사 측의 당회와 제직회를 거치지 않은 예결산 공동의회와 역시 당회를 거치지 않은 장로 15인 선출, 또 박노철 목사측이 노회에 청원한 위탁 재판과 관련하여 질의를 한 바 다음과 같은 헌법 해석이 내려졌음을 통보해 왔다.

헌법 정치 제13장 제 80조 제 3항 제 4호에 의거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으나 예산 및 결산을 위한 상회(노회)의 지시 행위는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예산 및 결산은 재정 감독권이 있는 당회(헌법 정치 제 10장 제 68조 제 5항에 의거), 예산 집행권이 있는 제직회(헌법 정치 제 13장 제 91조 제 5항에 의거), 예산 및 결산권이 있는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장로 15인 선출에 관하여는 헌법

정치 제 13장에 제 3항 제 4호에 의거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으나 장로의 선택을 위한 상회(노회)의 지시 행위는 위법이다.

또한 교회가 분쟁 시에는 장로 증원을 청원할 수 없으며 분쟁 전 정상적인 당회에서 결정한 것은 유효하지만 현재 분쟁 중에 있다면 장로 증원 청원할 수 없고 이것은 제 98기 총회 헌법위원회 해석사례 124번을 근거로 한다.

또한 노회 위탁 재판에 관하여는 신규접수된 고소,고발건에 대하여 당회 기소위원회에 회부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제121조를 적용하여 당회장이 직권으로 위탁재판을 청구 할 수 없으며 이것은 이미 지난해 12월에 통보된 내용에 포함하여 병합해석 한 답변이라고 했다.

홍해작전 중 주차장 안내

홍해작전 기간중 교우들은 은마사가 주차장, 카이로스빌딩 주차장, GS 주차장(교회에서 미즈메디 병원으로 가는 골목길)을 이용하면 된다. 주차

로 발생하는 요금은 개인이 지불 후 영수증을 사무국에 제출하면 합산하여 정산할 예정이다.

한국 기독교보

교회 분쟁 중 장로증원 불가

헌법위, 예결산안도 절차 밟아야

총회 헌법위원회(위원장:고백인)가 지난 7일 총회 임원회에 보고한 헌법해석 결과에 따르면, “교회가 분쟁 전에 정상적인 당회에서 결정한 것은 유효하지만 현재 분쟁 중에는 장로 증원을 청원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서울강남노회장이 “당회가 공동의회 소집결의를 하지 않는 경우 이를 상회로서 지시해 예외적으로 당회 결의없이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하며 예결산 안건은 당회는 물론 제직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예결산안건에 대해 그 통과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한 노회라도 이에 대한 공동의회 소집지시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의에 대해 헌법위원회는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으나 예산 및 결산을 위한 노회의 지시 행위는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헌법위원회는 “지교회의 해당년도 예결산에 관해 당회나 제직회의 사전 결의가 없이 공동

의회에서만 통과된 경우 그 효력이 있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도 “예산 및 결산은 재정 감독권이 있는 당회, 예산 집행권이 있는 제직회, 예산 및 결산권이 있는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라며 안건에 대해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헌법위원회는 “당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장로청원건이 노회에서 허락된 경우 그 허락결의는 유효한가”라는 질의에 대해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지만 장로의 선택을 위한 노회의 지시 행위는 위법”이라고 해석했다.

이와 함께 “교회가 분쟁중인 상황에서 장로 증원을 청원한 것이 허용되는가”라는 질의에 대해서도 “교회가 분쟁시에는 장로 증원을 청원할 수 없으며 분쟁전 정상적인 당회에서 결정한 것은 유효하지만 현재 분쟁 중에 있다면 장로 증원 청원을 할 수 없다”며 제 98회기 총회헌법위원회 해석사례를 적용했다.

김성진 ksj@pckworld.com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제101회 총회 주제 : "다시 거룩한 교회를" (로마서 1: 17, 레위기 19: 2)

행정지원본부

03128 서울시 중로구 대학로3길 29, 309호(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전화 (02)741-4350(4495212) 전송 (02)6008-2982 담당: 윤미경 실장

문서번호 예장총 제101-946호
시행일 2017. 6. 8.
수신 서울강남노회장
참조 서기
제목 헌법해석 통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서울교회 노문환 장로가 제출한 “헌법질의(부전지 포함),2017.4.13.”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음을 통보합니다.

해석 : 질의에 대하여 “이미 헌법해석 통보된 공문(예장총 제101-298호)에 명시된 대로 질의(가,나) 뿐만 아니라 질의(다)까지 포함하여 병합한 해석이다.”

질의내용 / 귀 총회 2016.12.14. 시행 예장총 제101-298호, 헌법해석통보(첨부#1) 관련 보충질의입니다. 귀 총회는 종전 헌법질의사항(첨부#2)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답변하지 않고 위 질의사항을 병합하여 “해석 : 질의(가,나,다),라)에 대하여, 당회 결의로 기소 및 재판을 대신하기로 한 후 책벌을 논의하던중 위탁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하며, 위탁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라고 답변하여 질의자들은 위 질의사항(가,나)항 뿐만 아니라 다,라)항에 대해서도 모두 위탁재판이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한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위 헌법해석통보 “당회결의로 기소 및 재판을 대신하기로 한 후 책벌을 논의하던중 위탁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하며, 위탁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는 답변은 질의사항 중 가,나)항에 대하여만 답변한 것일 뿐 질의(다,라)항에 대한 답변은 누락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귀 총회의 종전 해석통보에 위 질의(다,라)항에 대한 답변이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누락된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한 해석을 받기 위하여 이 건 보충질의에 이른 것입니다. 위 보충질의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총회장이 성
헌법위원장 고 백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제101회 총회 주제 : "다시 거룩한 교회를" (로마서 1: 17, 레위기 19: 2)

행정지원본부

03128 서울시 중로구 대학로3길 29, 309호(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전화 (02)741-4350(4495212) 전송 (02)6008-2982 담당: 윤미경 실장

문서번호 예장총 제101-947호
시행일 2017. 6. 8.
수신 서울강남노회장
참조 서기
제목 헌법해석 통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 드립니다.

- 1. 귀 노회"서강남 제60-012호, 헌법 질의(2017.4.14.) 건 관련입니다.
- 2. 위 관련근거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음을 통보합니다.

해석 : 질의)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13장(회의) 및 기관, 단체) 제90조(공동의회) 제3항 제4호에 의거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으나, 예산 및 결산을 위한 상회(노회)의 지시 행위는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질의2)에 대하여 “예산 및 결산은 재정 감독권이 있는 당회(헌법 정치 제10장(당회) 제68조(당회의 직무) 제5항), 예산 집행권이 있는 제직회(헌법 정치 제13장(회의) 및 기관, 단체) 제91조(제직회) 제5항), 예산 및 결산권이 있는 공동의회(헌법 정치 제90조(공동의회) 제5항제2호)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질의3)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13장(회의) 및 기관, 단체) 제90조(공동의회) 제3항 제4호에 의거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으나, 장로의 선택(헌법 정치 제6장(장로) 제41조(장로의 선택)을 위한 상회(노회)의 지시 행위는 위법이다.”

질의4)에 대하여 “제96회기 총회헌법위원회 해석사례 124번으로 같음하기로 하다.”

(124. 교회 분쟁시 장로 증원 청원 불가)
목포노회장 김강순 목사가 제출한 “제110-49호, 목포노회 수다교회 분쟁건에 대한 헌법질의 요청 (2014.7.16.)”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교회가 분쟁시에는 장로 증원을 청원할 수 없으며, 분쟁전 정상적인 당회에서 결정한 것은 유효하지만 현재 분쟁 중에 있다면 장로 증원 청원을 할 수 없다.”

질의내용 / 최정복 장로님과 이정심 권사님 부부는 수다교회 장로와 권사로 시무하다가 도초제일교회로 출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초제일교회 당회장 김성모 목사님 명의로 최정복 장로님과 이정심 권사님의 교인이명정원사가 2010년 12월 21일부로 수다교회당회에 왔

필사의 각오로



최광성 장로
(홍해작전
참모부장)

이후 하나님을 대망하며 씀 없이 달려 왔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이러한 교회 설립 이념과 전략과 목표와 비전은 성도들 마음에서 멀어져가고 개중에는 들어본 적도 없는 성도들이 계시기에 이번 홍해작전을 기해 다시 한 번 비장한 마음으로 새겨 보고자 합니다.

그 어느 교회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모범이 되고자 했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 번 하나님 은혜를 받기를 소원하여 열심히 다른 교회를 섬기며 세계를 교구 삼아 전도와 선교에 힘썼습니다. 이 밑바탕엔 홍해작전이라는 기도작전이 있었고, 홍해작전은 서울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면서 실질적인 힘이 되어 늘 서울교회를 힘껏 받쳐 주었습니다.

현충일인 6월 6일부터 시작하여 6.25전쟁 발발일인 6월 25일까지 진행

에게 전도, 빈약한 자 구제를 3대 목표로 삼으며 이웃에 등대, 민족의 구원선, 세상의 나침반이 되고자 세계 복음화, 교회 천국화, 문화의 기독교화의 비전을 품고 설립

되었던 예년의 홍해작전은 시작하는 날과 마치는 날이 의미하는 것처럼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내 앞의 홍해를 위해 기도하는 작전이었습니다.

지금 주님의 몸 되신 교회가 우리가 사는 동안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 할 시험을 만났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북한의 핵무기는 우리를 전쟁의 공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합니다. 또 우리의 가정엔 남모를 고민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불 시험을 이상한 일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 하셨습니다.

2017 홍해작전!!!

내일부터 6일간 새벽을 깨웁시다. 내 영혼을 깨우고, 내 가족을 깨우고, 내 이웃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하나님이 아 니고는 우리를 이 시험에서 건져낼 자가 없으니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므로 기필코 승전가를 높이 부르는 2017 홍해작전이 되도록 우리 모두 한 마음이 됩시다. 할렐루야!!!

내일부터 6일간 2017년 홍해작전이 전개됩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불같은 시험을 당하고 있는 서울교회를 위해 우리 모두는 필사의 각오를 가지고 홍해작전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어이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개혁주의 이념 아래 설립된 우리 서울교회는 열렬한 기도, 성경적 설교, 일관성 있는 프로그램의 목회 전략을 가지고 천국시민 양성, 만민

예수의 비유

씨와 토양들III (마 13:1-9)

「예수의 비유」는 이종운원로목사가 1984년 봉직하던 신학대학에서 안식년을 맞아 예루살렘에서 성경을 연구하던 중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던 소재들을 직접 접하며 시공을 초월하신 진리를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에서 말씀하심으로 영원한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한 비유의 말씀이야말로 예수 교훈의 핵심이라 생각하며 귀국 후 교회 강단을 통해 강론한 것을 모아 출판한 것이다.

이스라엘에 가면 돌짜밭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쪽을 향해 가다가 베다니를 지나면 바로 양쪽으로 산이 보이는데 모두가 돌 산이다. 그런데 그 돌 산은 바위 덩어리 위에 흙이 조금씩 덮혀 있어서 얼핏 보면 옥토같이 보인다. 그 곳에 씨가 떨어지면 흙이 살짝 덮혀 있기 때문에 얼핏 보면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는 것같이 보인다.

이것은 복음을 듣고 반짝하는 신앙과 같은 것이다.

돌짜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를 받는 것 같고, 결단하는 것 같고, 신앙생활에 적용하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않기 때문에 결국 옛 사람이 계속 남아있게 된다. 돌짜밭은 씨가 뿌리를 내리려고 해도 흙 밑에 무거운 바위가 깔려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뿌리가 내려가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 같은데 속사람은 아직 개혁을 일으키지 못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설교를 들을 때는 제법 은혜를 받는 것 같고 종교의 의식과 형식이 습관화 되어 몸에 밴 듯 하지만 그런 사람에게는 깊이가 없는 문제가 있다. 죄에 대해서 깊이 눈물을 흘려본 경험이 없고, 말씀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에 대해서는 깊은 이해가 없이 교회만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깊은 신앙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사랑이 있는 것 같고, 희생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열매도 없는 사람이다.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고 환난날이 되면 신앙의 뿌리가 얼마나 깊이 박혔는지 알 수 있다. 돌짜밭은 걸러낼 것을 걸러내고, 그

땅을 갈아엎지 않고는 씨가 나오지 않는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중생이라고 한다. 우리 모두는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돌짜밭과 같을 수밖에 없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헌금은 할 수 있다. 봉사도 할 수 있고 직분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인내가 없다. 고난이 올 때 오래 참지 못한다.

본래 식물의 뿌리는 밖에서 보이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감춰진 것이다.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겉에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풍랑이 일어나면 그 모든 것이 확실하게 보이게 된다. 역경 속에서 고난을 겪고, 무서운 유혹이 닥쳐올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는 그 뿌리의 깊이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교회에서는 특별히 열심히 특심인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교회에 문제가 일어날 때 보면 대개 이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된다. 왜 그런가? 그들에게는 거듭난 체험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야 한다. 새로워져야 된다. 묵은 생각, 묵은 습관을 버리고 옛사람이 가졌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광혜입니다.

3년전 한 방광암 수술과 백내장 수술 후의 재검과 건강검진을 위해 잠시 고국 방문 중입니다. 6월 4일 주일, 서울교회 예배 참석하기 위해 갔다가 들어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대로 되돌아 갔습니다. 예배드리는 일을 방해하는 것을 보는 일은 얼마나 슬프고도 아픈 일이던지요.

현지 사역은 고국의 후원교회의 강력한 기도와 사랑을 받아 힘을 얻어야 영적전투를 넉넉히 할 수 있는데 양쪽의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입장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하기 위해 왔는데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있는 현실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듯한 한심한 작태를 보았습니다.

후방의 강력한 지원(기도와 사랑)이 있어도 험겨운 전쟁을 하는데 하물며 지원이 끊기면 어찌 될까요?

원하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어 회개하며 도우심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마귀가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서울교회 성도님들은 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음받은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 거룩함으로, 깨끗함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악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위에 계신 한 분에게만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해결하실 것입니다.

잠시 고국에 와 있는 동안에도 집중적으로 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회복이 교회 회복!

요한계시록강해

이종윤 원로목사

주일 오후 5시 찬양예배 시

신천지(이단) 추수꾼의 출입을 금합니다

적발시 예배 및 설교 방해죄(형법 제192조), 퇴거불응죄(형법 제319조 2항),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선교회, 전도회 회장단

다음은 당회에서 추인된 명단을 포함한 선교회, 전도회 회장단이다.

<p>선교회</p> <p>빌립 한대석 안드레 오윤걸 베드로 장상국 엘리아 백승갑 모세 윤명구 이삭 손태현 아브라함 오정수</p>	<p>전도회</p> <p>도루가 김민아 루디아 노애리 비비 김정순 에스터 함정희 하나 허숙 리브가 한춘홍 사라 양옥자</p>
---	---

노후 상수도관 교체 공사

교회는 6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담장 및 부대시설 보수와 노후된 상수도관 교체 공사를 한다.

서울교회표지석이 있는 교회 길목 담장은 성도들의 육안으로 보는 것처럼 표지석이 5도 이상 앞으로 기울었고 표지석 밑으로 노후된 수도관과 가스관이 함께 매립되어 있어 현재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공사중 불편을 겪더라도 성도들의 양해 바란다.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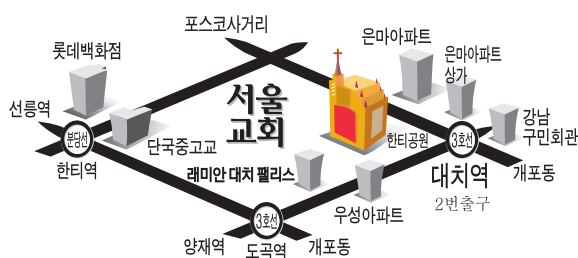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2017년 홍해작전에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여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홍해가 열리는 응답이 있도록
- 다락방 모임에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 6월 호국의 달을 맞이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본 당
	III 부 예 배	오후 2시	II, III, IV 층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웨스트민스터 홀
수 요 예 배	젊은이 예배	오후 2시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 당 II, III 층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